[양식 제10호]



혼 인 신 고 서 (^원 ^{일)}

※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,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"○"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구 분					남 편(부)							아 내(처)										
		<u></u>				(()h		1	<u>'L'</u>					(2)			1	-11(<u>~1</u> ,			
1	성명	<u>.</u>	한글	[(성)	/ (명))				<u>(a)</u>	또는	z] m	(성)	/ (명)					① 또는		ध्याद्ध
①호인당사자	6, 6	5	한지	- (성)				(T)	또는	715	(성)		(명)					工一	기명
당	퇀	[[한	·자)					전화						본(학	· 한자))		전회	-			
사	출/	샜 œ	1월일]																		
사 ^		주민등록번호							_									_				
신 고 인	등록기준지			1																		
	주소																					
V																						
2	부 성명																					
부	주민	[등	록번	호					_									_				
	등록기준지			[]																		
더 < 중에누더	모 성명																					
	주민등록번호			호					_									_				
皇	등	등록기준지																				
(3)외	 국빙	난식	에 의	 기하	ৢঽ৾৽	이성 i	립일] 자				녆			월		일					
	·본의								의 /	섟.	보ゥ		하는	협의		하영			 쉨[니용	П
	<u>'</u> -친혼													기에							<u>니요</u> 니요	
	타시		1 1		<u>. L.</u>	0 1	1 0	= 1	<u> </u>	'	'1 ' 1		'	1 '1	-11 0	П	1 / 1 •		" "		1	
	27								ତ୍) <u>r</u>	 E는 기	서명	주민]등록	·번호	-			_			
(7) 200	주 소																					
					① 또는 서명 주민							등록번호 -										
Ó.	!	주 소																				
8)	남	부	성명					(1)	또	는 서	명	<u> </u>	성명						<u> </u>	또는	서명
동				성명							는 서	며	2	주민등	록	비호						
0] [성명							는 서	_ /		<u></u> 성명						(i)	또는	서명
ス				성명							는 서		1	주민등	록빈	보호						
9신	고인] 출							1		 편(-					2 0	·내(>	허)				
	출인		_	성명									주기	민등	루번:	호.			-			

- ※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,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와 다른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 <u>눈표(★)로 표시한 자료</u>는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 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.
- ※ '아래 '사항은'-「**통계법」' 제24조의2**에 '의하여'**통계청에서 설치하는 '안구동항조사**입니다.'-「통계법」'제32조-및 '제33조에'' 의하여 성실응답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비밀사항이 철저히 보호되므로 사실대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※ 첨부서류 및 혼인당사자의 국적과 혼인종류는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.

인구동향조사

⑦ 실제 결	혼 생	활 시작일			년	윝	<u> </u>	일부터	동거				
환인종류	남편	①초혼 ②사별 후	재혼 ③이	혼 후 재혼	· -	아내	1호혼	2사별	후ス	대혼 ③이	혼 후	재혼	-
© 최종	남편	11 학력 없음 22 초	등학교	③ 중학교	_	아내	1 학력	없음	2 え	등학교	3 중	학교	
졸업학교	(부)	4 고등학교 5 디]학(교)	6 대학원	이상	(처)	4 고등	학교	5 대	학(교)	6 다	학원	이상
관 직업	남편	 관리직 사무직 판매직 기능직 	2전문직4서비스6농림어	:직		아내 (처)	1 관리 3 사무 5 판매 7 기능 9 단순	직 직 직 직		2 전문적 4 서비스 6 농림이 8 장치·기] :직 업		

작성 방법

- ※ 등록기준지: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.
- ※ 주민등록번호 :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(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)를 기재합니다.
- ※①.②란 및 ⑤.⑦란은 신고인 모두가 기재하며, 나머지 란(③.④.⑥.⑧)은 해당되는 사람만 기재합니
- ※ 주민등록전입신고는 본 가족관계등록신고와는 따로 하여야 합니다.
- ②란:혼인당사자가 양자인 경우 양부모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. ③란:외국방식에 의한 혼인증서등본제출의 경우 혼인성립일을 기재합니다.
- ④란:「민법」제781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자녀의 성·본을 모의 성·본으로 하는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러한 사실을 표시합니다.
- ⑤란:혼인당사자들이「민법」제809조제1항에 따른 근친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실[8촌이내의 혈족 (친양자의 입양전의 혈족을 포함한다)]을 표시합니다.
- ⑥란:아래의 사항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.
 -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에 의한 혼인신고(양 당사자가 생존한 경우에 소제기자만 신고 가능)의 경우에는 재판법원 및 확정일자
 - 부모의 혼인으로 인하여 혼인중의 자의 신분을 취득한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녀의 성명, 등록 기준지
- ⑦란:증인은 성년자이어야 합니다.
- ⑧란: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(2018. 6. 30.까지는 금치산자 포함)이 혼인하는 경우에 동의내용을 기재 합니다.
- ⑩라: 제출인(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)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 호를 기재합니다.[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]
- ※ <u>아래 사항은 「통계법」 제24조의2에 의하여 **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동향조사**입니다.</u> ⑦란: 결혼일자와 관계없이 실제 부부가 결혼(동거)생활을 시작한 날을 기입합니다.
- ☞란: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모든 정규교육기관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각급 학교의 재학 또는 중퇴자는 최종 졸업한 학교의 해당번호에 '영표(○)'로 표시합니다. <예시> 대학교 3학년 재학(중퇴) → ④ 고등학교에 '영표(○)'로 표시
- @란: 결혼할 당시의 주된 직업을 기준으로 기재합니다.
- [] 관리자: 정부, 기업, 단체 또는 그내부 부서의 정책과 활동을 기획, 지휘 및 조정(공공 및 기업고위적 등)
- ②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: 전문지식을 활용한 기술적 업무(과학, 의료, 교육, 종교, 법률, 금융, 예술, 스포츠 등)
- ③ 사무종사자 : 관리자,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를 보조하여 업무 추진(경영, 보험, 감사, 상담 안내통계 등)
- ④ 서비스종사자: 공공안전, 신변보호, 의료보조, 아미용, 혼례 및 장례, 운송, 여가, 조리와 관련된 업무
- ⑤ 판매종사자 : 영업활동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판매(인터넷, 상점, 공공장소 등), 상품의 광고·홍보 등
- [6]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: 작물의 재배수확, 동물의 번식사육, 산림의 경작 및 개발, 수생 동식물 번식 및 양식 등
- ①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: 광업, 제조업, 건설업에서 손과 수공구를 사용하여 기계 설치 및 정비, 제품 가공
- ⑧ 장치·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: 기계를 조작하여 제품 생산조립, 컴퓨터에 의한 기계제어, 운송장비의 운전 등
- ⑨ 단순노무 종사자: 주로 간단한 수공구의 사용과 단순하고 일상적이며 육체적 노력이 요구되는 업무
- 🔟 군인 : 의무복무를 포함하여, 현재 군인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(국방분이에 고용된 민간인과 예비군은 제외)
- III 학생가사 무직: 교육기관에 재학하며 학습에만 전념하거나. 전업주부이거나, 특정한 직업이 없는 경우

첨 부 서 류

※ 아래 1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.

- 1.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.
- 2. 혼인동의서[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(2018. 6. 30.까지는 금치산자 포함)이 혼인하는 경우, 단 신고 서 동의란에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는 예외] 및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(피성년 후견인의 혼인에 성년후견인이 동의하는 경우만)
- 3.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재판에 의한 혼인신고의 경우 그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 각 1부[조정, 화 해성립의 경우 조정(화해)조서 및 송달증명서 각 1부1.
- 4. 혼인신고특례법에 의한 혼인의 경우 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1부.
- 5.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
 - 한국방식에 의한 혼인의 경우:외국인의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(중국인인 경우 미혼증명서) 및 국적 을 증명하는 서면(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) 원본 각 1부.
 - 외국 방식에 의해 혼인한 경우:혼인증서등본 1부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(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) 사본 1부.
- 6. 「민법」제781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자녀의 성·본을 모의 성·본으로 하는 협의를 한 경우에는 협의사 실을 증명하는 혼인당사자의 협의서 1부.
- 신분확인[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호에 의함]
- ① 일반적인 혼인신고
 -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: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
 - 신고인 불출석, 제출인 출석의 경우 :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 공증 또는 인감증명서(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, 신고서 에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)
 - 우편제출의 경우 : 신고인 모두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(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, 인감 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)
- ② 보고적인 혼인신고(증서등본에 의한 혼인신고)
 -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: 신분증명서
 -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: 제출인의 신분증명서
 - 우편제출의 경우 :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
 - ※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7항의 ②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 께 첨부해야 합니다.
- ※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확정판결에 의한 혼인신고의 경우에는 출석한 신고인(사건본인들 중 일방)의 신 분확인으로 불출석한 신고인의 신분확인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.

